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 긴첩 시건 공소유지 경과

서울증앙지검 공안1부

□ 사건 개요

- 피고인 : 유우성(32세), 서울시청 계약직공무원(在北華僑)
- 공소사실 요지(국가보안법위반 부분)
 - 2006. 6. ~ 2012. 10. 회령보위부의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 수수, 침투 2회(특수잠입)
 - 2006. 8. ~ 2012. 1. 회령보위부에 노트북 등 제공 2회(편의제공)
 - 2007. 8. ~ 2012. 1. 밀입북 3회(탈출, 특수탈출)
 - 2011. 2. ~ 2012. 7. 탈복자 신원정보를 수집, 여동생 유가려를 통해 의령보위부에 전달(간첩, 희합통신) 3회 등

□ 주요 경과

- 2013. 2. 26. 구속기소(국정원 송치)
- 2013. 3. 4. 중인 유가려(피고인 여동생) 증거보전 실시
- 2013. 8. 22.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무죄 선고
 - ※ 여권법위반 부분 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3. 10. 2. 항소심 1회 기일
 - 항소요지 진술 및 입증계획 제출
- 2013. 11. 1. 항소심 2회 기일
 - 검찰, 화룡시 공안국 발급의 피고인 출입경기록 제출
- 2013. 12. 6. 항소심 3회 기일
 - 변호인, 연변주 공안국 발급의 피고인 출입경기록,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제출

- 2013. 12. 20. 항소심 4회 기일
 - 변호인, 기존 제출된 출입경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 ☀ 검찰에서도 추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채택
- 2014. 2. 28. 항소심 5회 기일 진행 예정

□ 출입경 기록 관련 진상

○ 검토 배경

- 중국에서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따라 언론보도 및 민변 기자회견 ☞ 2014. 2. 14.자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 2014, 2. 13.자 중확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명의의 사실 조회는 변호인축에서 제출한 문서 2건은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고, 검사 축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 ※ 언론보도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 도착 여부 및 변호인 공개 여부 확인
- → 법원은 2. 14. 오후에 사실조회 답변 사본이 도착하였고, 변호인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본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그 내용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
- → 법원은 검찰측에도 사실조회 답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언론보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실에 와서 사본 내용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여 검사가 판사실에 가서 직접 확인한바,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조회 답변 사본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 / 사실조회 답변 원본은 2. 17. 도착예정
- 출입경기록(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과 발급, 2013, 9, 26.) 확보 경위 및 진위1. 입수경위
 - ① 공소사실 입중의 주요 증거인 유가려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 진술에 대해 1심이 그 신빙성을 배칙하였으므로, 유가려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

- ② 수사 당시 국정원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을 검사에게 제시[2006. 5. 27. 북 ·중(입경), 2006. 6. 10. 북 ·중(입경) 기록] 한 바 있으나, 국정원은 협조자 보호를 위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
 - ※ 수사 당시 검사에게 제시된 출입경 기록은 2006. 5. 27.자 입경 기록 이후 바로 2006. 6. 10.자 입경 기록이 확인되는데(총 2회), 이후 국정원이 제공한 화룡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에는 2006. 5. 27.자에 입경과 출경과 각 1회씩 있고 2006. 6. 10.자 입경 기록이 있어(총 3회) 그 내용에 차이가 있 었으며, 그 문서 형식도 상이하였음(구속영장 청구시 수사기록에 포함)
 - ⇒ 피고인의 위 출입경 기록과 유가려의 진술(북한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2006. 5. 하순경 중국으로 떠난 피고인이 다시 도강을 하여 북한으로 들어왔고, 보위부에 적발되어 공작원 인입 후에는 통행증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취지)이 부합
 - ※ 위 출입경기록은 국정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것으로 보이나, 협조자 보호 차원에서 위 출입경기록의 존재는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요청 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음
- ③ 검찰과 국정원은 1심 당시부터 법정 제출이 가능한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중앙지검은 2013. 6. 대검을 통해 심양 한국영사관에 피고인의 중국-북한간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줄 것을 국제수사공조 방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
- ④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 내부 협조자로부터 받은 자료라면서 2013. 10. 중순경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전달하였고, 검찰은 위 출입경기록을 2013. 11. 1. 법원에 증거로 제출
 - ⇒ 위 출입경 기록상 피고인은 '2006. 5. 27.11:16 출경(입복)'으로 기재
 - ⇒ 국정원은 당시 출입경 기록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인만 찍힌 출입경 기록 외에 공증인이 찍힌 출입경 기록까지 함께 제출
- ⑤ 변호인축은 출입경기록에 대해 증거부동의 후 입수경위 및 공문 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입수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

- ⑥ 검찰은 외교부-심양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위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2013. 11. 27. 심양영사관-외교부를 통해 위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화룡시 공안국의회신(공문)을 받아 12. 6. 법원에 제출하였음
 - ☀ 이러한 회신이 가능하다는 것도 국정원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음
- ⑦ 12. 6. 변호인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명의'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다른 기재 부분을 지적하고,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중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상영
 - ⇒ 위 출입경 기록상 피고인은 '2006. 5. 27.11:16 입경(입증)'으로 기재
 - ⇒ 변호인의 등영상(안경형 몰래카메라로 촬영)에는 화룡시 공안국 실무자 등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화룡시 공안국은 그러한 공문을 발급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공문을 발급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하는 내용
 - ⇒ 변호인은 또한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국관리'대대'가 있을 뿐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의 발급 부서인 출입국관리'과'는 폐지된 직제라는 취지도 함께 주장
 - ⇒ 변호인은 피고인이 3회 연속 입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피고인의 5. 27. 11:16 입경, 2006. 6. 10. 15:17 입경 부분은 입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산오류로 생성되어 있다는 취지)라는 취지로 주장
 - ※ 검찰은 위 3회 입경 부분 중 '2006. 5. 27.11:16 입경(입중)'은 '출경의 오기'라는 취지로 대응
- ⑧ 검찰은 국정원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여 대응방안의 강구를 요구, 국정원은 변호인 제출 정황설명서의 발급기관과 동일한, 삼합변방 검사참 명의의 답변서(위 '정황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확보하여 검찰에 인계(심양영사관 이인철 영사 발급의 영사증명을 함께 제공)하였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

- 2. 국정원 제출 '출입경기록조회' 문서의 신빙성 확인
 - ① 출입경 기록을 화룡시 공안국 내부 협조자로부터 받았다는 국정원의 설명, 출입경 기록에 날인된 관인 및 공중인에 비추어 해당 출입경 기록이 중국 공무원에 의해 발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음
 - ② 출입경 기록의 신빙성 보강을 위해 대검이 외교부-심양영사관을 경유하여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위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공문을 확보
 - ※ 정식 공문 수발신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것이므로 국정원 제출 '출입경 기록조회'의 가장 중요한 진위 확인 근거
 - ③ 변호인 제출 정황설명서의 발급기관과 동일한, 삼합변방검사참의 관인이 날인된 답변서에,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는 결재 없이 발급된 문서이며, 피고인의 입출경 내역에서 '입'과 '출'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제 내용 확인

3. 변호인 주장에 대한 반론

- ①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정보협력을 통해 제공받은 것으로서 화룡시 공안국의 일반실무자들은 위 출입경기록의 제공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의 화룡시 공안국 실무자들의 발언 내용은 신빙하기 어려움(촬영 역시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님)
- ② 중국 출입국관리시스템이 업데이트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회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출입경 데이터 베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데이트 과정에서 새로운 입경 기록이 생 성될 가능성은 없음
- ③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해당기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변호인 제출 '정황설명'을 제공한 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 그 신빙성이 높음

○ 검토 결과

- 위와 같이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 서류는 유가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화룡시 공안국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심양 영사관을 경유하여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위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출
- 다만 주대한민국 중국영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조회 회신으로 위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위조라고 판단한 근거 및 사실조회 발급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
- ☀ 기타 정황 : 변개된 자료임을 알면서 제공하였을 가능성 여부
-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을 제공하기 전, 변호인 제출 자료와 같이 입경이 3회 연속된 기록(관인 및 발급처 기재 없음)을 영사확인서 첨부문서 형태로 검사에게 제시하였으나, 증거능력 취득 가능성이 낮다는 검사의 평가에 따라 회수
- 이후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이 공소사실(2차 밀입복은 도강하였다는 취지)과 달리 입경-출경-입경이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검사에게 문의하여, 비록 기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하여도확보한 기록 그대로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점에 비추어 국정원의 의도적 변개 또는 변개된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키 어려움
 - ☞ 기존 공소사살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증거를 위조할 이유 없음

□ 검찰 대체

- 공소유지 대책 [재판부 : 서울고법 제7형사부, 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사연17기)]
 - 공식 절차를 통한 출입경기록 재확보 추진
 - .현재 길림성에서 관할 연변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을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省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수 없어 길림성 관할 연변주 공안국이 발급)이고, 2. 20.경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중국 현지에서 국정원이 진행 중이며, 길림성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의 진위에 대한 인증 및 외국에 제공되는 신빙성 있는 문서를 담보하기 위한 인증을 모두 필하여 제공받을 계획임

- .사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출입경 기록은 변호인 제출 기록과 마찬가지로 최종 3회의 기록이 모두 입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서의 주(注)로 2006. 5. 27. 두 번째 입경이 실제로는 출경(입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음
- .위 자료를 제출하여,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의 내용이 피고인의 실제 출입경 경위와 부합된다는 점을 입중하여 위조 의혹 해소 예정
- 검찰 및 변호인의 사실조회 요청 항목은 18개 항목에 이르나 중국측의 사실조회 회신은 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부분만 있으므로 중국의 문서 발급절차 및 본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추가 사실조회 신청 또는 기존 사실조회 신청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 요구 검토

○ 언론 대책

- 2014. 2. 14. 22:10 ~ 23:10 브리핑(2차장검사)
 - *** 브리핑 당시 주요 추가 질의**
 - ① 이미 중국당국이 위조되었다고 공식 답변을 희신한 이상 위조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
 - ② 위조 여부에 대한 의혹은 이미 1달여 전부터 변호인에 의해 제기되었 는데 그간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어니한 것인지
 - ③ 문건 확보 과정에서 영사관의 관여 정도
 - ④ 본건의 진상을 어때한 방법으로 규명할 것인지(수사팀이 확인, 별도의 팀을 구성, 별도 팀을 구성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 ⑤ 국정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였는지
- 향후 문서들의 출처 및 발급경위 등 진상 확인하여 이를 즉시 공표예정

○ 유관기관간 대책

- 국정원
- ·국정원 제출 문서들에 대한 문서 출처 및 실제 담당자들 확인하여 관련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 .현재 진행 중인 '길림성 인중 출입경기록'의 조속한 확보 독려

- .본건 사실조회 회신이 주한 중국대사간이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 요청
- 외교부
 - .심양영사관 발급 공문들의 진위 여부 확인
 - .정황설명에 관한 답변서와 관련된 '영사확인서' 작성 경위 확인

.본건 사실조회 회신이 주한 중국대사관이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 요청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 일지

- 출입경기록 제출 경위 중심으로 -

서울증앙지검 공안1부

□ 항소심 1회 기일(2013. 10. 2.)

○ 검사

- 원심의 무죄 이유를 반박하면서, 핵심 증인 유가려의 일부 법정진술의 모순점을 이유로 유가려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항소이유 요지 진술
- 차회 기일에 피고인의 북한-중국 출입국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 하겠다고 입증계획 진술

○ 변호인

-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여권법위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항소이유 요지 진술

□ 항소심 2회 기일(2013. 11. 1.)

- 검사
 -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의 북한 중국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
 - ※ 위 출입경기록은 2013. 10.중순경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국정원 수사관이 중국 협조자를 통해 입수하였다면서 경사에게 교부(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과 관인과 화룡시 공중처의 도장이 찍혀있음)
 - ⇒ 검사는 중국 공안국이 공식적으로 발급해주지는 옷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출 입국 담당 직원이 발급해 준 것으로 이해

○ 변호인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부동의하고, 특히 검찰의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위법수집중거라고 주장

○ 재판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고, 다만 검사에게 변호인이 문제 삼는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해 차회 기일에 소명할 것을 요구

□ 항소심 3회 기일(2013. 12. 6.)

○ 검사

-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 관련, <u>검찰은 1심에서부터 외고 경로</u> (대검-외교부-심양 주제 한국영사관)를 통해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의 발급을 요청해 왔고, 이에 <u>화룡시 공안국이 국가간 정보협력 차원 에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지원해 준 것</u>이며,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 진술
-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u>검찰이</u>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 공문 회신을 추가로 제출
 - * 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을 교부받은 후, 그 출입경기록 발급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0. 24. 대경을 통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했고, 2013. 11. 27. 화롱시 공안국은 공문으로 이를 확인해 중

○ 변호인 Korec

-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피고인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
- 또한 화룡시 공안국 직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화룡시 공안국에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삼합변방검사참 발행 상황설명서(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출입경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없던 출입경기록 생성되었다는 내용)를 추가 제출

□ 항소심 4회 기일(2013. 12. 20.)

○ 검사

- 검사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은,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해 준 자료라는 점을 다시 강조
-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은 그 내용이 부정확하고, ▲화룡시 공안국 직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과 삼합변방검사참 발행 상황설명서는 모두 출입경기록 발급 등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진술되거나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 변호인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

○ 재판부

- 변호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고,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둘러싼 논쟁을 중단할 것을 고지
- 사실조회 회신 도착 후, 검사 제출 출입경기록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고지
 - ※ 4회 기일 종료 후, 검사도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소점 외에서 채택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일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 2013. 6. 20.(1심 재판 계속 중)
 - 검사는 대검찰청을 통하여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 2013. 6. 20.자 대검 명의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요청 공문 사본(첨부 1)
- O 2013, 7, 1, ~ 7, 8,
 - 대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의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 2013. 7. 1.자 및 7. 8.자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발송 공문 사본(첨부 2)
- 2013. 7. 중순경 ~ 9.
 -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고, 자국민 보호(피고인은 중국 국적자)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출입경기록 발급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정원 수사관을 통하여 전달 받음
- 2013. 9.발경
- enter for Investige - 1심 무죄가 선고(8. 22.)된 후,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중국 협조자를 통하여 중국 공안국의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을 비공식적 입수가 가능할 것 같고, 현재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음
- 2013. 10. 2.(항소심 1회)
 - 검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의 핵심 중거인 피고인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차회 기일까지 확보하여 제출하겠다고 입중계획 진술
- 2013. 10. 중순경
 -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중국 협조자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2부를 입수하였다면서 검사에게 제출

- → 1부는 화용시 공안국 졸업경관리과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점부 3), 1부는 이에 더해 화용시 공중처 도장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점부 4)
- O 2013, 10, 24,
 -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출입경기록은 화룡시 공안국의 공문을
 통해 회신받은 것이 아니어서 추후 증거능력 및 증명력 입증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 대두
 - 이에 검사는 대검을 통해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화룡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발송
 - ⇒ 2013. 10. 24.자 대검 명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 사본(첨부 5)
 - ※ 검사는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검찰에서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내면 화통시 공안국 명의로 사실조회 공문 회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문 발송
- 2013. 11. 1.(항소심 2회)
 - 화룡시 공안국 발급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
 - ⇒ 화통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사본(첨부 4)등 (1)
- O 2013. 11. 27.
 -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화룡시 공안국은 검찰의 사실조회 공문에 첨부된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 수신

tive Ic

- ⇒ 화룡시 공안국 명의 사실조회서 사본(첨부 6)
- 2013. 12. 6.(항소심 3회)
 - 검사는 위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
 - ⇒ 화룡시 공안국 명의 사실조회서 사본(첨부 6)
 - 변호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 ▲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행한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
 - ⇒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사본(점부 7), 삼합변방 검사참 발행 정황설명서 사본(점부 8)

- ★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내용 상이하고,
 ▲동영상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며, ▲정황설명서는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출입경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없던 졸입경기록이 생성되었다는 내용
- 2013. 12. 20.(항소심 4회)
 - 검사는 위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자료로서, 삼합 변방검사참이 공식 발행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상합변방검사참 발행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관한 답변 사본(첨부 9)
 - ※ 답변서 내용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는 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밖의 내용이고, 출입경 과정에서 '출'과 '입'의 혼동으로 잘못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 ※ 공판 종료 후, 경사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재판부는 소정 외에서 채택